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welabtax@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날 짜 2023. 01. 05. (총 6 쪽)

보 도 자 료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1. 05. (목) 09:30, 국회 농성장 앞

1. 오늘(1/5) 오전 9시 30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권리 보장 위한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우리 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제법상의 보편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위법·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들의 노동자성마저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3.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책임을 진짜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헌법과 국제기준에 맞춰 정상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폭탄을 방지하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실현일 뿐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인권위가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험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4. 그런데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내용을 부정한 채 여론 호도에 여념이 없고 거대야당은 국회 논의를 끌고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업 자체를 그저 불법으로 내몰고, 손배·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며, 보복 없는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개요

- 행사제목 :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01. 05. 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4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기자회견문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동의 형태와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며, 노동 3권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령으로는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는 복잡해져가는데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인정받기도 어렵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교섭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지지 않는 진짜 사장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떠돌며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다 파업에 이르게 된 노동자들에게만 천문학적인 손해폭탄이 떨어지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무력화되어 온 세월이 너무 길다. 노동3권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천문학적인 손해 가압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노동자성과 노조 결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진짜 사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파업의 책임만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그 삶을 파괴하는 이 모순을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동자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이렇게 훼손되는 노동권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3년 1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기자회견 발언문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당하게 일한 대가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해고하고 차별하지 말라는 노동자의 이야기는 노동이 전부인 노동자들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생존투쟁입니다. 생존을 위한 목숨건 투쟁에, 국가와 사법부는 ‘불법’이라는 낙인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내어주었고, 자본은 그를 이용해 노동자들이 가져본적도, 가질수 있을거라고 기대할수도 없는 수십억, 수백억을 청구하며 임금과 살던집까지 압류하면서 노동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토록 방기해왔습니다. 정의로운 말하기에 언제나 자본과 권력은 약자들의 생존을 짓밟고 법원은 자본과 권력의 편에 인용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자본에 의한 일방적인 착취와 대우에 내몰리지 않게 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 절박한 법이 바로 노조법 23조개정입니다.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법이 정한 노동자의 밖에 있습니다. 법이 수많은 노동자들을 법 밖으로 밀어내어,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규직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고용형태로, 간접고용형태로 주변화되어 아무런 안전망 없이 차별받고, 쉽게 버려진다. 법은 그대로이고, 그 법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은 약자들이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희망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착취와 대우에 노동자들은 목소리 낼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사용자”가 더이상 법뒤에 숨어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이 현실을 바꿔내야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건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연대로 목숨걸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고, 그 노동조합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이야기도,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내모는 사회에서, 나의 삶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목소리를 낸 것이 오히려 개인의 삶을 위태로운 상태로 내모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나의 삶의 안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막는 이들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동조합이 무력해지는 것, 노동자들이 부당한 착취가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그러나 그렇게 국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어갔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막고 있는 정부여당은 이 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이해할 노력도 없어보이며 노동 3권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을 쏟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과 인권에 직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에 미온적인 민주당의 타협과 나약함이 지금의 정부를 더욱 국민의 생존에 안하무인인 정권으로 만들고 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일하다 젠더 폭력으로 희생되어도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를 부정하는 정권입니다, 이동이 곧 생존이라는 투쟁 앞에 무정차로 응하는 정권입니다.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가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것에 귀족노조를 운운하는 정권입니다. 생존을 위해 생존을 건 단식이라는 절박하고 모순된 선택으로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정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 바로 국민의 인권과 안녕을 위해 복무하는 당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기회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에 앞장서십시오.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들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용자가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국가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용자에게는 노동자들의 이 권리 행사를 수인할 의무가

주어진다. 즉 사용자의 재산권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단결을 훼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용인하는 한에서만 보장되는 것이다. 자신의 피땀으로 노동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수인의무를 이행하는 선에서만 재산권이 보장되는데, 이것이 ‘노란봉투법’이 주창하는 바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사용자보다 이를 침해하는 사용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면 안 되고, ‘노란봉투법’은 손배폭탄을 방지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 법이다.

우리 헌법에는 ‘한계’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23조1항에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많은 기본권 중에서 그 ‘한계’까지도 법률을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는 것은 재산권이 유일하다. 헌법 119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권의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며, 손배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속히 개정해야 한다.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앞선 발언에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사회적 양심의 문제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 사회적 양심의 근원인 헌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법률가출신 대통령의 발언으로는 참 웃기는 말입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권력을 법으로 통제하는 원리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써 보호하고, 이를 위해 국가권력을 법으로써 제한하고 통제하겠다는 헌법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법치주의는 노사관계와 같이 국가관계가 아닌 사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말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표현하자면 노사법치주의가 아니라 노사정책법치주의여야 합니다. 노사간의 권리배분이 사회적 양심 혹은 그 근거로서의 헌법에 따라 정의롭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법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된 노사정책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든 법원이든 자의적으로 노사관계를 규정하고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하여 타방의 자유와 권리를 혹은 그들의 일상과 삶을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사간의 정의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일하여 먹고사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택배나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노동3권의 주체가 되는 노동자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헌헌법을 만들 때

노동3권을 정한 제헌헌법 제18조에서 말하는 노동자에는 농민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가장 지배종속성이 없는 경우가 농민입니다. 오로지 자연에만 종속될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제헌헌법은 이들까지도 “근로자” 즉 노동자이므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헌법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제2조 개정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이윤 있는 곳에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무로 이윤만 챙기고 그 사람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내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노동3권, 특히 단체교섭권은 노동조건을 향상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단체교섭의 테이블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진짜 사장 말입니다.

그런데 참 기막힌 말이 나옵니다. ‘노조법 제2조를 홍길동법이라고 하면서도 사돈의 팔촌가지도 불러내어야 하는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말이랍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인지.. 5단계, 6단계 하청의 경우 원청사장이 저 밑바닥의 5, 6단계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까지 나타나야 되겠는가라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세상에 하청이 5단계, 6단계까지 이루어지면 그게 제대로 된 경제체제입니까?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꾸려고 해야지요. 게다가 설령 전문화나 특수화 때문에 그런 하청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시다. 그런 경우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조건이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갑질이고 경제적 횡포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 또한 고쳐야 하는 우리 경제의 고질병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노조법 제3조 손해배상 제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기본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자리합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자기의 결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까지 포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수십번 되내이는 “자유”라는 말의 핵심이 이런 원칙이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노동3권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조의 단체행동은 노조 단위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책임은 노조가 져야 합니다. 그 노조의 결정을 이행한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헌법상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은 이런 맥락에서 발달하고 또 우리 헌법에 도입된 것입니다. 노조법 3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자기책임의 원칙에 의할 때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무엇에 흠렸는지 느닷없이 단체행동으로 인한 직접손해뿐 아니라 영업상의 이익이니 자산 가치니 뭐니 하면서 간접적이고 파생적인 손해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 사용자측의 과실이나 고의성 행위에 대한 책임은 빼먹어 버립니다. 회사가 단체교섭에 부실하게 임함으로써 야기된 손해, 단체교섭과정에서 부실한 정보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기된 손해,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야기된 손해 등은 단체행동에 나선 노조의 몫이 아니라 회사 또는 경영진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왜 우리 법원은 이런 민법의 기본원칙을 노사관계에 대해서만 무시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꾸어야 합니다. 노조법 제3조 개정은 이런 질곡을 타파하고 사용자측이 제대로 된 경영책임을 지게끔 하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노사관계가 확립되도록 하는 디딤돌 입법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일하며 먹고사는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은 이 노동자인 국민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입법입니다. 노동자인 국민들이 기죽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입법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인권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로 충만한 우리 헌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의 직무유기의 과오에서 벗어나 조속히 노조법 개정애 나서야 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주춤거릴 때가 아닙니다. 당장 노조법 2조 3조 개정하십시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